

보고안건

연번	유형	안건명	제안부서
1	정관개정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	서울의료원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1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 및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 -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 -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개정내용

- 정원 증원 :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5명

- 행정자치부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」(2016년) 및 서울특별시 「2016년 임금피크제 세부 실행계획 제출 및 도입추진 철저」에 따름
-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인원수 증가분 매년 반영

구분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의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 지원직	공무직	임금 피크제 별도정원
개정전	1,736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1
개정후	1,741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6
증감	5	-	-	-	-	-	-	-	-	-	-	5

- 노동이사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권한 신설
 -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「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에 따름
 -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의 이사회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에 관한 사항 신설

향후계획(안)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2020년 4분기 중
- 서울특별시장 승인 및 정관 개정(안) 시행 : 2020년 4분기 중

작성자 기획조정실장 : 조동희(☎2276-7015) 기획경영팀장 : 김학진(7050) 담당 : 한경선(7042)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3(노동이사의 안전제출 및 정보열람)</p> <p>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전을 제출하여야 하며,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전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관부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2.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계</th> <th>임원</th> <th>의사직</th> <th>약무직</th> <th>간호직</th> <th>보건직</th> <th>관리직</th> <th>연구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운영지원직</th> <th>공무직</th> <th>임금 과 별 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736</td> <td>3</td> <td>273</td> <td>15</td> <td>714</td> <td>122</td> <td>141</td> <td>9</td> <td>131</td> <td>-</td> <td>307</td> <td>2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 과 별 정 원	1,736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1	<p>별표2.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계</th> <th>임원</th> <th>의사직</th> <th>약무직</th> <th>간호직</th> <th>보건직</th> <th>관리직</th> <th>연구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운영지원직</th> <th>공무직</th> <th>임금 과 별 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1,741</u></td> <td>3</td> <td>273</td> <td>15</td> <td>714</td> <td>122</td> <td>141</td> <td>9</td> <td>131</td> <td>-</td> <td>307</td> <td><u>26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 과 별 정 원	<u>1,741</u>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<u>26</u>
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 과 별 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736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 과 별 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,741</u>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<u>2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